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결 과 보 고 서

2010. 2. 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제 출 문

경기도교육감 귀하

이 보고서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2. 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 원 장 곽노현

부위원장 김인교

위 원 김규영

위 원 김영기

위 원 김혜래

위 원 박 진

위 원 배경내

위 원 서미향

위 원 안승문

위 원 오동석

위 원 이원일

위 원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양재길

장 학 관 유선만

장 학 사 오정호

< 목 차 >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 4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 15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초안 비교표 ····· 22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조례 제정 병행 조치에 대한 건의 ····· 26

[부록]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 35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조례 제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 총론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치법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두텁게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경기도의 교육자치 규범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학생인권의 실현은 소통·자율·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조례안은, 학생은 일방적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자유·자율·참여·평등·안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두텁게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법과 법령 및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 상위 법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규범적 기준을 수용 및 구체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 구현을 지향하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편적인 학생인권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이되 우리 사회 특히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여론수렴과 의사소통과정을 충분히 거쳐 마련되었다.

○ 조례안의 체계 및 구성

- 조례안은 5개의 장(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과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제1조), 개념 정의(제2조),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제3조),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의 총론적 책무(제4조),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학생의 인권'에서는 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조례에서 모두 망라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은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학생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제3조 제1항)하고, 각 인권 항목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추상적 규정,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등 10개 절로 구분하고 각 절마다 하위 조문을 두어 학생인권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에서는 인권교육과 홍보(제29조 내지 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 제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 제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에서 학생인권옹호관(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내지 제47조) 등 실효성 확보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이 교육현장이 된다는 점,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조치를 지양하고 상담 및 조사와 시정권고 등 비강제적 조치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제5장 보칙'에서는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48조), 조례 집행에 필요한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제49조)을 규정하고 있다.
-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부칙 제1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제1항),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시한(부칙 제2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조항 해설

○ 제1조(목적)
-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이며,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제2항
-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 그 제한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참여하에 마련된 학칙 등 학교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조(책무) 제3항
- 학생인권의 보장은 교사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배려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의 책무로서 명시한 것이다.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하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을 규정한 원칙적 규정이며, 이 조항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소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 등 조례안이 구체화하지 못한 많은 차별 영역을 시정해가고 그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준거 규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항
- 조례안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 학생간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육당국의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 법원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체벌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교육방법, 상담교사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마련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조례안은 체벌을 금지하여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조례안은 0교시,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며 그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 한편,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규교과 외 학습시간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과중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안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두발 길이 제한만 안된다고 못 박고 있으며, 그 밖의 용모 제한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 두발 길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예컨대 퍼머와 염색 등 용모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교복과 관련, 조례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복 착용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탈선 증가나 학습분위기 훼손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개성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두발 길이 규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획일적 통제방식이 지니는 문제가 크다는 점, 탈선을 막고 학습분위기를 조장할 다른 교육적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점,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 두발길이 규제 금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규정한 것이다.

○ 조례안 제13조(사행활의 자유) 제4항

- 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휴대전화를 통신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를 제한하되, 교육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등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최근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나 규제, 압수 방식 등이 학교나 교사마다 달라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 바, 조례안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조례안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반성, 서약 등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A안]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별도로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사상의 자유 명문화'를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국회의장 자문기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8, 111쪽).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1998.7.16. 선고 96헌바35 결정)고 판시함으로써 해석상 사상의 자유를 확인하였다.
- [B안] 한국 사회의 현대사의 굴곡은 '사상'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고 특정 사상만을 내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화된 생각을 표상하는 단어로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서의 양심과 사전적 의미에서 구별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해석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핵심에 두고 양심을 외곽에 배치하는 해석을 한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려 양심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조례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 [A안]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 목적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학교장의 부가조건 또한 너무 늦은 시간 회피, 안전 확보를 위한 요청 등 집회방식에서 부수적인 제한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집회 내용에 따른 제한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B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화한 규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조례로써 부정될 수 없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뿐이다.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 구성 및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학생도 시민이므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학생의 미성숙성은 막연한 우려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은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함께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며, 학생 참여 보장은 학생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식 또한 길러질 것이다.

○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조례안은 학생에게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조례안은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징계공고 금지 등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특히 징계가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조례안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마련,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참여 보장, 가정형편 때문에 빈곤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에 있어 소수학생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제33조(보호자 교육)

-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로 하여금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협력이 또한 중요하므로 보호자에 대한 인권관련 교육 또는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 인권교육의 활성화는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조례가 구체적으로 실현됨에 있어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 조례안은 인권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제도개선 등 학생인권 관련 안건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지는 전문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옹호관
- 조례안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 권리구제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옴부즈퍼슨(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학생인권 참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특성상 적절하다는 고려에 따라 조례안은 시정권고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제재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할지역별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3년 임기, 1회 연임 가능)을 두고 전문조사원 등 옹호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강제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옹호관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의무 및 보고 의무, 권고내용 미이행시 사유 소명 의무 등을 통해 실효적인 인권옹호가 가능할 것이다.

○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조례안은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또는 침해당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구제신청 제도는 조례안 제27조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부칙 제2조 제2항

- 조례안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 단위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교 각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교장,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한을 규정한 것이다.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초안 비교표

<표> 최종안과 초안의 주요 조항 비교

표제	최종안	초안	비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언어"의 예시 포함
폭력으로부터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폭력양태의 구체화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권)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에서의 권리 추가 -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예시 추가
정규교과 외 학습활동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견 수렴 명시
휴식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권을 '휴식을 취할 권리'로 명확하게 표현 - 휴식권의 구체화 - 강요 금지
사생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⑤ 학교는 다른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신설

활 의 자유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 생활 의 비밀	제14조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 정보에 교육비 미납사실 등을 예시로 제시
사 상 양 심 종 교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성문 자체 허용의 의미 명확화 [A안] - 제1항에서 기본권 확인, 제2항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구체화, 제3항에서 종교의 자유 구체화 [B안] - 표제 등의 “사상” 삭제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른 양심의 개념 표현
표 현 의 자유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A안] - 권리 규정과 학교 의무 조항 분리 [B안]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삭제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 - 상담조력에서 적절한 지원으로 확대
교육환경	제22조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서, 화장실 예시 추가 - 학교환경에서 '녹지공간 확대' 예시 추가
징계 등에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표제로 변경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포함
청구권 및 청원권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청구권 등 행사에 대한 비밀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		- 소수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신설

	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내 인권 교육 등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권 관련 교육 강조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제40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9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임명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 요구 - 옹호관 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제 도입
학생 인권 옹호관의 직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옹호관의 직권조사 인정 -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구체화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조례 제정 병행 조치에 대한 건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자문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1. 15인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뢰

- 자문위원회는 인권·헌법·교육·복지 전문가와 교사단체의 교권 정책 담당자 등 15인에게 초안의 수정·보완 사항을 짚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초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검토 의견,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병행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의뢰하여 조례안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2.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는 2010년 1월 19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일은 경기남부권 종합공청회, 24일은 학생 중심 공청회, 25일은 경기북부권 종합공청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학계·교사·보호자·학생 토론자들과 방청인들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3. 학생참여기획단의 검토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꾸려진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도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로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4.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매체,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초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른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부터 몇몇 조항에 대한 우려 입장,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두루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 조례에 대한 우려 의견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뒤 이를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우려의 바탕에는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관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런 우려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갈등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관리자, 교사, 보호자, 학생 상호간의 갈등은 물론, 학생지도방식을 둘러싼 교사·학생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가 무엇을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자리 잡을 때, 학생들도 학교의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불필요한 학생통제에 쓰이는 교사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학생과 소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쓰일 때,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만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 지시, 타율과 획일성을 거둬낸 자리에 대화와 소통, 자율과 다양성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기둥인 교사-학생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동안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을 잘 보장해 왔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온 학교들은 외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뒷받침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적극 옹호하지만, 그 자율성이 학생의 인권과 교육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옹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미성숙하지 않다면 제정될 수 있고 미성숙하다면 제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권은 학생의 미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며, 연령과 성숙이 자동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의 활동과 논의 수준을 지켜보면서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입증되지 못한 편견이자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자문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 초안의 주요 쟁점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전체 48개 조항 가운데 몇몇 조항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고, 그 결과 두 개의 조항은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되, 나머지 조항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안 조항을 향해 제기된 우려 사항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체벌 금지(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교사의 체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학생간 폭력, 집단따돌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실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번 고심을 거듭해 보아도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수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육당국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도 체벌 대신에 상담이나 다른 교육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벌에 의존하여 확립되는 교권은 진정한 교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폭력이 없는 학교,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2.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증가,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제·반강제하는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반교육적인 일들도 빚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때 일시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을 이유로 대면 '강제' 야자나 보충수업을 빠질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자나 보충수업을 강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남아 추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원 수강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무작정 강제로 잡아둔다고 사교육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두발·복장의 자유(12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두발·복장 등을 통해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권리를 제한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은 두발·복장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탈선 방지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학생의 두발·복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특히 두발 길이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 요청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고 학교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두발·복장 제한을 없애고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청도 강력했습니다.

- 교복과 관련해서는 애초 원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신발 모양, 외투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학생·보호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업분위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원안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현실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나 규제·압수 방식 등이 학교나 교사마다 달라 불거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보호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조례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사상·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16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에게도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반성이 강요되는 일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적 지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적극 경청하면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반성문이라는 형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 강요'를 금지함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반성, 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로 표현함으로써 조문을 손보았습니다. 학생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소통은 적극 독려되어야 하되,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을 강요하는 일은 인권 침해이자 비교육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또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유지하는 [A안]과 함께 "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B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위반입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양심 개념에 당연히 사상이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B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양심의 개념을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조례에 어떠한 표현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6.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1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위험하다거나 학내 질서 혼란, 학생의 정치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여는 것도 집회이고 학생회 임원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여는 것도 집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목적, 형태, 규모 등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도 특정 형태의 집회만을 떠올리며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위험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내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잘만 운영한다면 부러 집회까지 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자문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례 제정 전체를 발목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조례에 집회의 자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또한 이미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 규정 없이도 권리 보장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7.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18조),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19조)에 이어 20조에서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한 권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맞는 성숙한 의견 개진과 책임의식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야

말로 이 권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에서도, 세 차례의 공청회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논리정연함을 갖춘 성숙한 의견과 토론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참여의 기회를 계속 차단당해온 현실에서도 성숙한 의견과 태도를 스스로 길러왔습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 받는다면, 학생들의 성숙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

-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자문위원회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 보장을 개별 학교나 교사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병행조치들은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일선 학교의 의무 이행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1.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 학교 단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 조례에서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 중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등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지침서 형태로 마련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지원

- 학교 단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내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문제를 총괄 지원하고 학내 해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내 구제 절차는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학생인권옹호관,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교육청-일선학교-지역사회의 상보적 관계 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 합니다.

- 체벌을 대신할 상담체계 구축과 대안적 교육 지원 방식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때, 조례안의 정신에 맞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제시

- 학생들이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학생자치기구에게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한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학생선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인권과 조례에 관한 적극 홍보와 교육

1) 모범 사례 발굴 소개

-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고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모델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나 정책연구학교 지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 체벌 없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 교사의 정당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관리자·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

야 하겠습니다.

-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연수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할 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례 내용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생인권 교육안 마련과 강사단 구축

- 학생인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제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될 때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교육적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한을 정리하여 교사 연수에서 활용한다거나,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등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과 창의적 역량에 기초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록]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학생인권 목록 중 추가·보완할 내용]

<조항 보완>

- 제3조 2항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에서 ‘비례원칙’의 의미가 이해되기 어렵다.
- 제4조 3항의 “교사 등 타인의 인권”에서 ‘교사’를 굳이 특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타인의 인권’이면 충분
-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은 제22조(교육환경권)에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조례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환경을 담는 문구로 보완
- 제6조(차별 금지)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견’보다는 그냥 ‘의견’으로/ 6조에서 ‘본 조항(차별받지 않을 권리)은 이 조례의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적시. / 학업 성적에 따른 차별 금지(우열반 편성의 악용 사례나 성적 기준으로 학급이나 학생회장 선출이나 선호 단체 가입 등의 특혜 사례 등의 차별 금지)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서 ‘학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
- 제8조 2항에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의 의미가 모호
- 제3절의 제목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 되어 있는데, ‘교육권’또는 ‘교육에 대한 권리’로 했으면
- 제9조의 ‘학습권’이란 단어. ‘권’자를 붙이려면 사회적·법적으로 뭔가 공유된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할 텐데 ‘학습권’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공유된 개념을 확보했는지 의문. 굳이 이 단어를 쓰려면 이 조례에서의 학습권의 의미를 앞부분에 정의해 두어야
- 9조 2항에서 ‘교내·외 행사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참석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교내·외 행사참석’뒤에 ‘강요’를 삽입
- **9조(학습권)에 내용 추가/변경 : ② 학생은 교육과정안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교육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는 다양한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학생,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학습권’에서 ‘인문계/자연계’ 선택 강요에 대한 견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보장, 특별활동에서의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이 추가될 필요. 또 ‘예체능 학생’이라는 범주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우려
- 제10조: 학습권을 선택권에 기초하기보다 강제학습 금지를 대원칙으로 삼아야
- ‘제10조 정규교과 외 학습 선택권’에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계획 수립에서 부터 학생 참여나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야/ 제10조(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에서 정규교과(이과, 문과, 예체능과)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정규교과 편성시 반영

- 제11조(휴식권)의 조항명칭을 상위범주인 ‘교육받을 권리’의 하위조항 명칭으로 더 적절하게 하는 대안은 없을지? 조항명칭으로만 보면 건강권 분야의 내용으로 보임
- 제11조 휴식권의 의미가 소극적. 휴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학습강요만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학생 자신의 연령과 취미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것의 향유를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살렸으면.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의미 모호.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교복치마길이도 두발길이처럼 규제하진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음
-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사적 기록물 열람이 불가한 물품에 일기장, 개인수첩과 더불어 ‘휴대폰 기록’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성 및 동성) 교제’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함을 명시화
-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교복 자체에 ‘바느질된 이름표 착용’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동조 2항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 학생들에게 학급별로 성적일람표를 회람시켜 성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조 1항과 4항은 그런 절차의 반인권성(타인이 성적을 열람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수의 학생들이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자신의 성적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고민될 필요
- 제15조 제3항은 교사의 평가권과 충돌할 수 있음.
-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 자치활동 내실화의 필수 조건인 ‘관련 예산 책정’과 ‘예산 집행 및 결산’ 등의 권한을 학생회에 부여/ 자치기구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상을 명확히 제시. 재정 지원 방안, 학교에서 학생 자치기구가 가지는 대내외적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시 필요.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학생자치기구와의 관계, 또는 학운위가 연 8회 이상 열려야 하듯이 자치기구의 논의(회의) 활동의 횟수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제시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에서 1항과 5항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편제상 5항이 1항의 내용을 보장 내용으로 구체화
- 제21조: 교육복지 구체화
- 제21조: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내용의 명확한 구분 필요/** 교육복지는 크게 '학습복지'와 '생활복지'를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복지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두 가지 내용이 혼합된 느낌임.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학습복지' -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돌봄. '생활복지' -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배려. / ‘학교와 교육감은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교육복지로 제한된 복지 개념을 보다 통합적으로 학생과 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개념으로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학생의 복지권은 학생의 생존권과 신체·심리·사회적 발달권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
- ‘제21조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토록 제안
- 제21조에서 ‘상담조력’을 지원(보다 포괄적 의미)으로 표현

- 22조: 차별금지 대원칙 추가. 지역, 학교별 차별도 금지/
- ‘제22조 교육환경권’에서 여학생에게 있어 통상 차별적인 화장실 숫자(개수) 등이 특별히 지적
- 제24조 ‘학교급식권’ 더 적절한 용어는? 학교급식권은 보통 학교급식을 책임/납품하는 권리 개념으로 많이 인식
- ‘제26조 징계절차에서의 권리’에서 ‘징계 공고 금지’, ‘인권적이고 교육적인 징계 및 생활지도 시스템 구축’, ‘인권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

<내용 추가>

- 의의를 담은 전문 추가
- 제4조 책무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의 보호자·후견자의 책무도 포함
- 환경권 추가 : 교육 소음, 학교숲
-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명시
- 경세·사회적 처지와는 무관한 '학습곤란학생' 또한 약자임을 고려.
- 대만(타이완)과 같이 청소년미혼모(학생미혼모)의 학습권과 복지권도 보장
- 이 조례가 ‘비인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훈련원’ 등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보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상벌점제 관련 조항 포함시켜야

<보완>

- 체벌금지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대문이 되는 권리 조항 아래 구체 조항 삽입하는 방식으로 변경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직접 서술하기 전에 대전제가 되는 ‘생명·안전·신체의 자유’에 대한 일반원칙을 간략하게 서술. / 국제아동권리원칙인 3P(protection, participation, provision)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P에 대한 일반원칙을 삽입
- 각 조마다 구체적인 차별방지책 언급. 예를 들어 제 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신체적·인종적·성적 특성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폭력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거나, 제9조(학습권)에서 ‘신체적·인종적·성적 특성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교재나 사례 사용은 안된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소풍, 야외학습 등)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서 ‘학생회 구성은 성별 및 약소자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청구권)에는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는 식으로.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에 별도의 조문 또는 항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국내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고, 해당 초중등학교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장애, 한부모, 학생선수, 다문화, 빈곤, 전문계 등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 범주 학생들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 조례 초안(제9조제3항)의 방식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시급한 특정 범주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권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결과가 될 것
- △자유권(표현, 양심 및 사상, 집회 및 결사, 사생활의 자유 등) △복지권(교육권, 소외계층 학생 지원, 위생 및 환경 개선 등) △보호권(폭력,착취,학대로부터 보호,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참여권(교내 및 교외 활동에의 참여, 사이버 참여 등) 에 비추어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

<쟁점조항 관련>

- 두발자유: 길이 자유 넘어 전반적 두발 자유 명시해야.
- 휴대폰 소지 : 초중등 구분하여 조건을 제시해야/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신중 재검토
- 학내 집회 : 집회 제한 요건을 학교운영위 또는 학생인권옹호관, 심의위원회의 확인 거치게 해야.
- 수업시간 이외에 평화로운 집회 참여 권리, 교육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결사권, 학칙 등 규정 제·개정과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은 문제가 있다

<기타>

- 문구 수정
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라는 단어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② 제23조를 ‘놀이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권리’로 하고 내용도 단어도 수정.
③ 각조의 괄호 제목. 예를 들어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권리’ 등으로 통일하는 것
④ 제19조 2는, ‘학생은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 조례에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으로의 통일이 필요.
⑤ 제20조의 5는 ‘····사항을 결정할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로 수정.
⑥ 제25조의 3은 보건실과 함께 ‘보건교사’ 문제도 같이 생각
⑦ 제26조 2는 ‘회복’ 보다는 ‘심신회복’이 더 적절.
⑧ 제9절의 제목은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변경

- 몇 개 조항에 ‘... 교육적 목적... ’이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권충돌 사안 발생 시 ‘교육적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가 더 쟁점이 될 수도 있음.
- 체벌 정의 분명히

-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이 맞는 표현인가요? 개발·운영으로 수정
- 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다른 용어로 대체

- **각 조문의 논리성, 명확성, 간결성, 체계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예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에게)라는 말은 동어반복이 아닌가? 삭제해도 무방할듯

→ '학생의 인권'을 '학생인권'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어차피 삭제된 것이니, 굳이 '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로 할 필요가 있나? 다음과 같이이 하면 되지 않을까?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제한의 근거', '제한의 한계', 그리고 '학교의 책임' 내응 순으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학교규정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

④학교는 학칙 등 학교규정울 제정하는 경우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조문을 다듬어야할 곳이 더러 있다.

[학생인권 증진 분야]

<증진계획>

- 학생인권자료실 혹은 인권도서관을 도교육청 수준에서 마련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교육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설정
- 학교평가에 관한 초안 제37조는 제도 자체의 취지와는 별개로 경쟁과 서열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인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학교평가 시 개선조치 뿐 아니라 모범사례 공포,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 인권친화학교 선정·발표, 인권상 수상/ 학교 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서 포상 및 시정 권고 절차 등
- 제30조에 '교육용 교재발간'에 대한 규정 포함. 그리고 제32조의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부담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조문검토가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하는 것도 가능. 보호자 교육은 제29조의 홍보에서 강화될 부분
- 실태조사: '3년마다'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초한 실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제33조 ①은 '교육감은 3년 마다 경기도내‥‥'로, 제34조 ②는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로 수정
- 학생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과 심의위원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 37조 학교별 평가 : 획일적 평가보다는 계몽으로.
- 학교별 인권실현 상황 평가'에 긴장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이를테면 기존 학교평가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관련 장학진이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 실천계획 수립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해마다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지, 5개년 계획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시간표/ **기본계획(ex, 5년)-연도별실천계획-추진실적 점검체계를** 수립해서 구체적 실행을 확보하고 점검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명시
-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인권옹호위원회(가칭) 또는 아동전문법률지원단 등과 연계되어 네트워킹
- 제34조 1항의 '인권실천계획'의 해석이 자칫하면 '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항과 2항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
-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견제 권한이 다소 미약
- '제31조 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에서 연수 대상을 '교원'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제2조 3호에서 규정한 '교직원'의 범주를 교육행정직 모두를 포함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교직원 전반의 인권감수성 신장을 위해서는 '신규교사 및 교육행정직 임용 직전연수', '각종 자격연수'시 인권강좌를 배치하도록 강제
- 인권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교과 교육과 교과외 교육, 초중고의 교급별 교육, 학생의 집단별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 등.

<학생참여>

- 참여위원회의 구성 가운데 남녀학생비율, 도시와 농산어촌 학생의 비율, 일반계와 전문계의 비율, 공학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비율, 초등과 중등의 비율,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등이 규칙이 아닌 '부속 조례'에서 명시
-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교육감 위촉 20명을 제외하고 80명의 위원 선정 방법에서 지역별, 학교급별 비례 대표성을 확보. 지역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한다'가 되어야
- 제36조 학생참여위원회 선발방식 규칙으로 명시
- 제36조는 설치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감은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제36조 ④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
- 학생의 참여 방안만이 아니라 참여의 결과(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에 대한 확인과 보고도 넣었으면
- 단위학교의 학생자치기구에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권', '학생자치예산의 편성·결산권' 및 '학교규정 개정요구권'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
- '학생참여위원회'와 학교의 '학생회'가 연동될 수 있는 장치가 부재. '학생참여위원회'의 운영방식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인력, 행·재정적 지원책이 제시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옹호관이 독립 기관인지 여부, 독립기관이 아니라면 경기도 교육감 소속 등으로 그 소속을 명확히
- 인권옹호관의 임명을 독립기구로 다시 설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정함.
- 인권옹호관의 권역을 교육의원의 선거구와 다르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5인 이내의 상임 위원과 가능한 여러 명의 비상임위원(현장 교원, 지역사회활동가, 인권운동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별로 학생수 몇 명 당 한 명의 원칙으로)을 두어 학생인권옹호관 활동이 현장과 접맥될 수 있도록
- 교육청 학생인권상담실 운영은 제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 현재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이용률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상담센터에 학생인권담당자를 두는 것이 현실적
- 인권옹호관, 인권상담실 직원 등을 인권마인드와 인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구성하는 것이 핵심
- 각 인권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인권옹호관들의 합의체가 있는 것인지 등의 사항이 분명해질 필요. 인권옹호관들이 관할지역에서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식으로 보완
- 지역교육청 역할 의문. 모든 상담과 구제는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 ① 제39조에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기관

의 소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부속기관'으로 하는 등. ②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의 옹호관 '해촉' 규정 마련 ③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는 규정 포함 ④ '직권조사' 권한 추가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연간 활동을 담은 '연간(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직무가 포함되어야. ⑥ 제39조 3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일부임으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⑦ 상임 옹호관 중 1인을 대표 옹호관으로 한다라는 규정 필요. ⑧ 제4장의 제목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로 하고, 제1절과 제2절로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 진정사실의 비밀유지, 구체적으로 취한 후속조치의 통보의무
- 학생인권옹호관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교육감의 역할 :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보직정도로 생각하거나 실질적인 중재역할 대신에 사사건건 단위학교의 특정 업무를 간섭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보다 엄격하고 중립적인 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호 체제도 마련
- 학생인권옹호관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인권옹호위원회(가칭: 일본의 사례 참조), 민간 아동전문법률지원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옹호국(가칭) 등과 연계되어 네트워킹
- 학생들 사이의 인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령 학생들 사이의 폭행, 욕설, 금전 갈취, 집단 괴롭힘 등의 경우, 어디까지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구제 대상인지를 명확히
- 학생인권옹호관은 **시정권고 및 제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데(제41조), **시정권고**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 권고**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 만약 학생인권옹호관이 개별적 독립기구로서 시정권고와 제도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역별로 동일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시정권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도개선권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우려.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구성(제40조)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교수)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지 의문.

[병행 조치 제안]

- 교사회 법정기구화. 교무회의 의결기구
- 학생 수 감소
- 국가권력으로 자유로운 교사 권한 확보.
- 교원 지위 향상. 그들의 인간적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교육의 권리,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시/ '학교 규칙' 제정의 실질적 위상 정립과 법제화
-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권한, 교사의 자기 권한 실현 방식, 갈등 상황 대처 방안의 체계화, 유형화, 체벌없는 생활지도의 새로운 틀 마련과 운영에서의 교감, 교장의 역할, 학교 조직의 재구성 등 학교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시

- 학생선도위원회처럼, 교사에게도 학생들과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 구조 필요/ 권위적, 과도한 학생 체벌 및 규제에 대한 학부모, 학교간 협의 구성체 구성 유도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학내구제절차의 정비
- 학생의 인권 목록은 갖추어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한 사유를 정하거나 또는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 거쳐야 할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발굴·소개
-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실천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공유/ 체벌이나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생활교육 연구 및 실천
- 학생 대상 인권교육 강화/ 문집 편찬 등.
-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안 마련 및 강사단 구축
- 교과외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 활성화
- 학교 내 상담기능 강화/ 초등의 경우,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상주
- 인권을 옹호하는 모범사례의 발굴과 소개
- 학교 환경에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기
- 학생 인권보고서의 정기적 발간 및 보고서에 기초한 협의
-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마련, 폭력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
- 학교내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교육차원의 가칭 '학교 내 학교-학생간 갈등 문제 해소 위원회'의 설치
- '학생으로서의 생활 태도 규범집'의 표준화 매뉴얼 보급
- 학생 폭력, 학습분위기 저해 학생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학부모 의무 상담제 도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
-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관료, 학교 관리자의 상보적 관계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할 것임. 이를 공청회나 해석 자료에서 소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
- 학교운영 모델(실제운영 사례-대안학교 혹은 실제 인권친화적인 일반학교)을 소개하고, 운영 모형을 구조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 연구사업이나 정책연구학교 사업으로 진행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선수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구체적인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준 제시